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531

발의연월일: 2024. 8. 2.

발 의 자: 박홍배・이기헌・이상식

민병덕 • 김태년 • 김현정

김남근 • 강득구 • 강훈식

정진욱 • 한준호 • 박정현

박해철 • 이광희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임금체불액은 2023년 1조 7,845억 원, 2024년에는 3월 기준 5,718억 원으로 전년 동기 4,075억 원 대비 40.3% 증가하는 등 일하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에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음.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사업주를 상대로 대지급금의 회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 여파 및 다수의 무재산 사업주 등의 영향으로 회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2014.12.31. 신설)에 따르면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의 임금·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는 다른 채권보다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및 회수는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곤란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안정적인 일터 복귀 지원을 위 해 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수행하는 사업으로 대위변제 채권의 안정적 인 회수는 향후 다른 근로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함.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등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근로자 임금채권최우선 변제권과 같은 순위(대법원 2015.11.27. 선고 2014다 208378 판결)로 그 순위에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의 규정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 받음이합당함.

이에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채권도일반 근로자와 동순위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 임금 체불 근로자의 적기 적정 지원 등을 강화하고자 본 법률 개정을 발의 함(안 제415조의2).

법률 제 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5조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채권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신청한 파산사건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	
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	
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	
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	
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	
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	
다. <u>다만, 「임금채권보장법」</u>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	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경우에도 그러하다.
<u> </u>	